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4. 12. 16)

(제명변경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 채용절차, 계약,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본조개정 2020.9.1.]

제2조(구분)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강의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외국인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0.>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5.1.>

제3조(응시자격) ① 강의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3.5.2.>

②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연구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3.5.2.>

④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

제4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3.5.2.>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는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세부 전공분야와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23.5.2.>

④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하고 전산 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5.2.>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3.12.26., 2023.5.2.>

⑥ 교양분야의 교원은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3.5.2.>

⑦ 그 밖의 평가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5.2.>

제5조 삭제 <2023.5.2.>

제6조 삭제 <2023.5.2.>

제7조 삭제 <2023.5.2.>

제8조 삭제 <2023.5.2.>

제9조 삭제 <2023.5.2.>

제10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은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개정 2013.12.26.>

제11조의2(직급 부여 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직급 부여는 「교원인사규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한정하여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 [별표 제1호] 경력년수 환산율표에 따르며 각 호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 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12조(임용) ① 비정년계열 교원은 최초 2년 이내에서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 급여는 연봉제 또는 호봉제로 계약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

③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실적을 평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및 총장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이나 대학정책사업을 위해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 중 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

에는 임용사유 소멸날짜를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1.9.1.>

⑤ 연금, 의료보험 등은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제13조(계약) ① 임용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개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임용교수의 직급 및 근무지
2. 직무내용 및 책임강의시간
3. 임용기간(계약기간)
4. 급여
5. 근무조건
6. 기타 계약조건

제14조(재계약 기간 및 업적 충족기준) ① 재계약 기간은 조교수는 2년 이내, 부교수는 4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1., 2018.9.1.>

② 재계약을 위한 업적 충족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기간 동안 축적한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2014.3.1., 2014.10.31., 2015.9.1., 2017.3.1., 2018.9.1., 2020.4.14., 2021.8.20.>

재계약 구분	평가기간	충족 기준				비고		
강의중심 교수 (수퍼스타 칼리지 소속)	조교수 (2년) 부교수 (4년)	1. 재계약을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음				교원업 적 평가 규정의 평가항 목 적용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가)강의평가 (조교수: 2년 평균) (부교수: 4년 평균)		점수	(나)연구업적 (조교수: 2년 평균) (부교수: 4년 평균)		점수	
		상위 10% 이내		70점	70점 이상		70점	
		상위 30% 이내		60점	0점~70점 미만		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	
		상위 50% 이내		50점				
		상위 60% 이내		40점				
		상위 70% 이내		30점				
		상위 70% 초과	강의평가 4.0점 이상	30점				
			강의평가 4.0점 미만	0점				
가. 강의평가는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 나. 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연평균 연구업적 점수 ※ iClass 강의 개발: 교과목당 인센티브 점수 5점 부여								
2. 재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 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책임시수 충족								
강의중심								

교수 (단과대학 소속)	1. 재계약을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른다. 2. 재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구업적 및 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			
	구 분	연구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점 수	조교수 (2년)	120점	120점	120점
	부교수 (4년)	240점	240점	240점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340점		
		680점		
산학협력 중점교수		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책임시수 충족 다.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 평균이 상위 70% 이내(다만,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름		

③ 교원은 임용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④ 재계약 심사 시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연구 수행 능력, 강의 능력, 전공 영역 활동 실적, 대학 발전에 기여도 및 인품, 학생 상담·지도 능력 등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주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충족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특별채용, 해외파견 등)가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의2(계약의 중도해지)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잔여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
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구조조정 및 예산감소, 직제개폐 등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정책상 계속 임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의3(재임용 심의) ①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을 희망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재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이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임용 심의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되, 재임용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9.] [본조개정 2023.11.19.]

제14조의4(재임용 소명)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명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9.]

제15조(승진) ① 조교수로 임용된 후 6년이 경과한 비정년계열 교원은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3.1.>

③ 교원의 승진 최소 업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값의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학기당 0.5점을 가점하며,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0점을 가점한다. <신설 2022.9.1.> <개정 2023.11.19.>

구 분	평가기준	비고
강의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심교수	- 연봉등급 산정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다만, 연봉등급 산정결과가 없는 경우, 재임용 평가결과 이용) - S등급 90점, A등급 80점, B등급 70점, C등급 60점	
외국인교수	- 학기별 강좌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4.2이상 90점, 4.2미만 4.1이상 80점, 4.1미만 4.0이상 70점, 4.0미만 60점	

2. 신입교원 컨설팅을 이수하고, 1개 교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

3. 학부에 개설한 강좌에 대하여 ℓ Class(ℓ Class+, x Class, t Class를 포함)를 4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K-MOOC, JJ-MOOC(교내 공개강좌), 또는 시그니처 원격수업 강좌를 개발한 경우에도 ℓ Class를 1회 운영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2.9.1.> <개정 2023.11.19.>

[본조신설 2016.8.16.]

제15조2(승진 심의) ① 교무처장은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승진 제청을 위한 순위를 정하되, 업적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구업적, 현 직급 임용일, 신규 임용일, 연령 등의 순으로 한다.

② 총장은 승진 대상 교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진을 제청하여야 하며, 승진이 결정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

다.<개정 2024.3.1.>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3.1.>

[본조신설 2023.11.19.]

제16조(보수 및 후생)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연봉제로 계약한 교원의 보수는 「비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보수지급 세칙」에 따라 지급하고, 호봉제로 계약한 교원의 보수는 「교원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

② 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였을 경우에 본교 「초과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2. 3. 1자, 2012. 9. 1자 재임용 대상교원의 재계약 업적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재계약	기간	충족 기준	비고
강의중심 교원	2년	-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균점수 350점 이상(연평균) - 강좌평가결과평균 : 전임교원평균 백분위 상위 30%이내 또는 3.96이상(연평균)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항 목 적용
산학협력 전담교원		- 연구업적 총족량 : 200점(연평균) - 계약임용직교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 업적등급평균 A이상	

③ (경과조치) 2012. 3월 및 2012. 9월 심사 기준 연봉제 교원 중 강의중심교원의 업적등급은 연평균 업적평가점수(연구,교육,취업,봉사)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신규,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의 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계약 구분	평가기간	충족기준	비고																						
강의중심 교수 (기초융합교 육원 소속)	2년	-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강좌평가 점수, 연구업적 점수 합계 100점 이상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 <table border="1"> <tr> <th>(가)강좌평가 (2년 평균)</th> <th>점수</th> <th>(나)연구업적 (2년 평균)</th> <th>점수</th> </tr> <tr> <td>상위 10% 이내</td> <td>70점</td> <td>70점 이상</td> <td>70점</td> </tr> <tr> <td>상위 30% 이내</td> <td>60점</td> <td rowspan="4">0점~70점 미만</td> <td rowspan="4">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td> </tr> <tr> <td>상위 50% 이내</td> <td>50점</td> </tr> <tr> <td>상위 60% 이내</td> <td>40점</td> </tr> <tr> <td>상위 70% 이내</td> <td>30점</td> </tr> <tr> <td>상위 70% 미만</td> <td>0점</td> <td></td> <td></td> </tr> </table> ※ iClass 강의 개발 : 강의당 인센티브 점수 5점 반영 - 책임시수 이상 강의 ※ 강좌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좌평가평균 백분위 기준으로 하며, 2년간의 백분위를 평균 산출 후 점수 적용함 ※ 연구업적점수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만 인정	(가)강좌평가 (2년 평균)	점수	(나)연구업적 (2년 평균)	점수	상위 10% 이내	70점	70점 이상	70점	상위 30% 이내	60점	0점~70점 미만	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	상위 50% 이내	50점	상위 60% 이내	40점	상위 70% 이내	30점	상위 70% 미만	0점			교원업적 평가규정 의 평가 항목 적용
(가)강좌평가 (2년 평균)	점수	(나)연구업적 (2년 평균)	점수																						
상위 10% 이내	70점	70점 이상	70점																						
상위 30% 이내	60점	0점~70점 미만	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																						
상위 50% 이내	50점																								
상위 60% 이내	40점																								
상위 70% 이내	30점																								
상위 70% 미만	0점																								
강의중심 교수 (단과대학 소속)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연구업적충족량</th> <th rowspan="2">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th> </tr> <tr> <th>인문사회 계열</th> <th>이공 계열</th> <th>예술 계열</th> </tr> <tr> <td>점 수</td> <td>120점 (60점)</td> <td>120점 (80점)</td> <td>120점 (80점)</td> <td>400점</td> </tr> </table>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 책임시수 이상 강의 - 강좌평가 상위 70% 이내(전임교원 백분위 기준)	구 분	연구업적충족량			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점 수	120점 (60점)	120점 (80점)	120점 (80점)	400점										
구 분	연구업적충족량			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점 수	120점 (60점)	120점 (80점)	120점 (80점)	400점																					
산학협력 중점교수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름																							

※ 강좌평가 결과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의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중심교원의 경우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어도 평가에 반영하며, 조정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조교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2.5.2.>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9.6.25.>

경력년수 환산율표

구 분	환산율	비 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 재직경력	100%	*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나. 전문대학 이상의 강의경력	30~50%*	
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에 부합하는 경우	70%	
라. 총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마.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에 부합하는 경우	50%	
2. 연구경력		
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	70%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 5년 초과 안됨. 석사과정 재학년수 : 2년 초과 안됨
나. 석사학위 취득자	100%	
다.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70%	
라. 박사학위 취득자	100%	
마.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연구한 연구원 경력	70%	
바.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3. 산업체 등 근무경력(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동일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인정기관범위]참조
나.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100%	
다. 대학 전공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대기업체, 중기업체)	100%	
라. 재야 범조인	100%	
마. 종교단체의 교직자	100%	
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계리사 등에 준하는 경력	100%	

[인정기관범위]

- ①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 ②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대기업체이며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③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별표 제2호] 삭제 <2023.5.2.>

[별지 제1호] 삭제 <2023.5.2.>

[별지 제1-1호] 삭제 <2023.5.2.>

[별지 제1-2호] 삭제 <2023.5.2.>

[별지 제2호] 삭제 <2023.5.2.>

[별지 제3호] 삭제 <2023.5.2.>

[별지 제3-1호] 삭제 <2023.5.2.>

[별지 제4호] 삭제 <2023.5.2.>

[별지 제4-1호] 삭제 <2023.5.2.>

[별지 제5호] <삭제 2015.9.1.>